

특허번호 : 110-11-172

[특허갱신]

특허보세구역 특허장

운 영 인	① 법 인 명 (성 명)	주식회사 경동이앤에스			
	② 사업자등록번호	129-81-71673			
	③ 주 소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304			
특 허 내 역	④ 보세구역 명 칭	(한글)주식회사 경동이앤에스 보세창고	종 류	영업용보세창고	
		(영문) KD E&S BONDED WAREHOUSE			
	⑤ 대 표 자	김 경 배	생 년 월 일	1969.05.27	
	⑥ 소 재 지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304(제1영업장)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298(제2영업장)			
	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	<제1영업장> 창고 6동 9,465.26㎡ 야적장1개소 605㎡ 합계 10,070.26㎡	<제2영업장> 창고 2동 7,202.06㎡ 야적장1개소 4,875.38㎡ 합계 12,077.44㎡	<전체> 창고 8동 16,667.32㎡ 야적장2개소 5,480.38㎡ 합계 22,147.7㎡	
	⑧ 설비 수용 능력	창고 : 46,668 CBM[42,001 M/T], 야적장 : 7,672CBM[6,904 M/T]			
	⑨ 장차전사건설물품종류	일반수출입화물, 위험물(단, 위험물은 허가품목에 한함)			
	⑩ 작업의 원재료				
	⑪ 설치·운영의 목적	수출입화물을 보관 장치하기 위함			
	⑫ 특 허 기 간	2018.06.28 ~ 2024.06.27.	⑬ 최초특허일자	2003.06.30	
⑭ 특 허 조 건	1. 관세법상 세관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준수 하십시오. 2.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특허를 취소합니다.(사실상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 포함) 3. 특허갱신시 특허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				

「관세법」 제1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6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.

2018년 6월 14일



울 산 세 관 장

